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8. 25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8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9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로과장 권병준)

 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 관련 조항을 정하기 위함

 주요골자

-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(안 제3조)
-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가?	<input type="radio"/> 2000. 7. 1일자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
<input type="radio"/>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비용을 공동구 점용자가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최초 점용자로 한다고 개정하는 이유는?	<input type="radio"/> 통신공사 등에서는 점용허가를 받고 재하청을 하기 때문에 최초라는 용어를 넣어 개정코자 하는 것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72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5

제출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 관련 조항을 정하기 위함

 주요골자

-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(안 제3조)
-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1호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5조제4항의”를 “제37조제3항 및 제4항, 동법시행령 제36조의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2조제1항제12호”를 “제3조제9호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) 시장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“공동구 점용자가”를 “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, 이를 공동구 최초 점용자가”로 한다.

제5조 내지 제7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점용료 과정과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제37조제3항 및 제4항, 동법시행령 제36조의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동구”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<u>제3조제9호</u>

(신설)	<u>제3조(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)</u> 시장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공동구관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<u>제3조 (생략)</u>	<u>제4조 (현행과 같음)</u>
<u>제4조(관리) ①(생략)</u> ②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 비율에 따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.	<u>제5조(관리) ①(현행과 같음)</u> ②.....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공동구 최초 점용자가.....
<u>제5조~제7조 (생략)</u>	<u>제6조~제8조 (현행과 같음)</u>